

의안번호	제2826호
의 결	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

발 의 자	이정숙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4. 8. 23.

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(이정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3.

발 의 자 : 이정숙, 김석한, 김향숙,
이쌍자, 김원순, 정영환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7조)
- 다.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- 라.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이설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마.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복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(안 제
12조,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43호

- 예고기간: 2024. 8. 23.(금) ~ 2024. 8. 28.(수)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로등”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.
2. “보안등”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.
3. “유지관리”란 가로등 및 보안등(이하 “조명시설”이라 한다)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·보수·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등) ① 조명시설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.

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성군 조명

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,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(설치기준)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설치공사는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.
2.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3. 조명시설의 설치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4. 그 밖에 설치기준은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조명시설편)」, 「전기사업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설치 우선순위)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사건·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
2.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
3. 아동·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굣길
4. 수해가구가 3가구 이상으로 수해자가 많은 지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6조(설치 제한)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.

1.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(집 마당, 축사, 사업

장 등)

2.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(단,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3.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공동주택(아파트) 단지 내
4. 농작물 피해, 수면방해,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
5.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

제7조(신청절차)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.

제8조(비용부담 등)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고성군이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, 공동주택, 상가,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.

제9조(관리대장 및 표찰)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

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점검 및 보수) ① 군수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.

③ 조명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설)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.

1.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

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제12조(훼손시설의 복구) 군수는 조명시설이 굴착공사, 차량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)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1.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
2.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성군수가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.

조명시설 설치 신청서

설치위치(주소)	
조명시설 수혜가구 및 주민수	
신청사유	
기타의견	
비고 (전신주번호 등)	

- ※ 첨부: 1.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
2. 동의서 부(필요한 경우)

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:

성 명: (인)

연 락 처:

고성군수 귀하

조명시설 설치 동의서

조명시설 설치 (신설·이설) 위치	고성군	읍·면	리	번지 앞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	------

본인 소유 토지(인근)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, 조명시설로 인한 제반문제(수면장애, 농작물 피해 등)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위 동의자

주 소		전 화 번 호	
성 명	(인)	생 년 월 일	
소유 토지 현황	고성군	읍·면	리 번지

고성군수 귀하

□ 도로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로”란 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,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

2. “도로의 부속물”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

가.~마. (생략)

바.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3.~9. (생략)

□ 도로법 시행령

제3조(도로의 부속물)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(이하 “도로관리청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~3. (생략)

4. 방호울타리, 충격흡수시설, 가로등, 교통섬, 도로반사경, 미끄럼방지시설,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·관리를 위한 재료적치장

5.~11. (생략)

□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

제38조(도로안전시설 등)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, 방호울타리, 충격흡수시설, 조명시설, 과속방지시설, 도로반사경, 미끄럼방지시설, 노면요철포장, 긴급제동시설, 안개지역 안전시설, 횡단보도육교(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)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, ③ (생략)

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
제24조(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) ① 국

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전기공사업법

제3조(전기공사의 제한 등)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.

1. 국가
2. 지방자치단체
3.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

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, 제17조(통지는 제외한다), 제22조 및 제27조제2호·제3호·제4호(통지는 제외한다)·제5호를 준용한다

□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)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(이하 “정기점검”이라 한다)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·면·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

가.~사. (생략)

아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. 다만, 「도로법」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.

자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

차.~거. (생략)